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2. 9. 25.(화) 09:30~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
2.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3.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5.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확충,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육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4)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5)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나.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2)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3)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4)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5)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6) 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7) 경비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관련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조항이 삭제(2009.04.01)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6조)
- (2)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관련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조항이 삭제(2009.04.01)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나.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 제2조)
- (2)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제6조)
-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일시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8조)
- (4) 유용미생물 공급제한 및 공급장려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 하고자 거창군 유용미생물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다. 시대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거창군 유용미생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2, 3, 4)
 - 급수 업종별 요율표(별표 2)
 - 상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 : 494원/m³ ⇒ 544원/m³)
 - 업종 구분표(별표 3)
 - 업종 축소에 따른 별표 조정(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편입)
 -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별표 4)
 -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 인상(13mm : 360원 ⇒ 750원 등)

- (2)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8조, 제46조)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안 제8조)
 -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 ⇒ 「수도법」 제71조(안 제46조)
- (3)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 (4) 미비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안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41조)
 -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관련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동과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 납부주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 급수표지 별지 서식 지정(안 제41조)
- (5) 옥내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7조)
 - 감면기간 관련 단서조항 신설 : 최대 3개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개정조례안은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 나. 이 개정조례안은 평균적으로 12.6% 인상되었다고 하나, 가정용 1~20톤, 일반용 1~30톤 사용자에게는 10% 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15% 인상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다. 우리군의 경우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최저로 나타나 있음. 그 원인으로 생산원가가 전국평균의 2배 이상으로 경남도내에서 최고 높은 것이기 때문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급수 업종별 요율표(별표 2)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12.6% 인상을 금액에서 평균 8.6% 인상 금액으로 수정.
- ※ 대비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m³)	m³당 단가 (원)	
		상정안	수정안
가정용	1 ~ 20	544	<u>530</u>
	21 ~ 30	737	<u>700</u>
	31이상	963	<u>920</u>
일반용	1 ~ 30	668	<u>665</u>
	31 ~ 50	835	<u>800</u>
	51 ~ 100	974	<u>930</u>
	101 ~ 300	1,115	<u>1,070</u>
	301이상	1,254	<u>1,200</u>
산업용	1m³당	652	<u>620</u>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9.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9.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9.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20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하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94원/m³⇒104원/m³)
- 하수도 업종 축소 : 4종 ⇒ 3종

- (2)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리 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4조제6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30조)
- 중수도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제1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안 제26조)
 -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3조제1항)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안 제24조제6항)
 -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의 규정(안 제28조제2항)
 - 「지방세법」의 예 ⇒ 지방세 징수의 예(안 제30조)
- (3) 하수도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단서, 별표 4, 별표 5)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 신설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산정(안 제22조 단서, 별표 5)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예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개정조례안은 2004.01.07.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 조례 표준안」(10.9.30)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나. 이 개정조례안은 평균적으로 12.6% 인상되었다고 하나, 가정용 1~20톤 사용은 11%, 일반용 1~30톤 사용은 10% 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14~15%를 인상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높아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다. 우리군의 경우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경남도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원인으로 생산원가가 전국평균의 3배 이상으로 경남도내에서 최고수준이기 때문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12.6% 인상을 금액에서 평균 8.6% 인상을 금액으로 수정.
- ※ 대비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생략)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m ³)	m ³ 당 단가(원)	
		상정안	수정안
가정용	1 ~ 20	104	<u>101</u>
	21 ~ 30	143	<u>136</u>
	31 이상	192	<u>182</u>
일반용	1 ~ 30	121	<u>120</u>
	31 ~ 50	159	<u>153</u>
	51 ~ 100	194	<u>186</u>
	101 ~ 300	224	<u>215</u>
	301 이상	278	<u>265</u>
산업용	1톤당	125	<u>120</u>